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 범위 등의 결정내용

2020. 11

제 1 장 계획의 개요

1.1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

- 본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석곡IC에서 부터 곡성군 경면을 연결하는 국도27호선(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경면) 도로 시설개량을 통해 병목현상 해소, 도로이용자의 교통편의 제공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1.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관련 [별표2]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 시기
마. 도로의 건설	2) 「도로법」 제2조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의 건설공사 계획(별표 3 제5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규모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의 도로노선을 선정하는 때
계획노선	○ 총 사업연장 : 22.9km(신설 9.9km, 확장 13.0km)	

나.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사업은 도로 건설사업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 관련 [별표3]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임

〈표 1.2-2〉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및 협의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요청 시기
5. 도로의 건설사업	○ 「도로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4km 이상의 신설 2) 2차로 이상으로서 10km 이상의 확장	○ 「도로법」 제23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계획노선	○ 총 사업연장 : 22.9km(신설 9.9km, 확장 13.0km)	

1.3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가. 추진경위

- 2010. 09 : 제3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11~15)반영
- 2014. 12 : 국도 등 중장기계획수립연구
- 2016. 08 : 제4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16~2020) 미반영
- 2018. 01 : 제5차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건의 (전남도)
- 2019. 01 :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사업 선정
- 2019. 11 : 사업계획적정성 검토(KDI)
- 2020. 03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
- 2020. 09 :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제출

나. 향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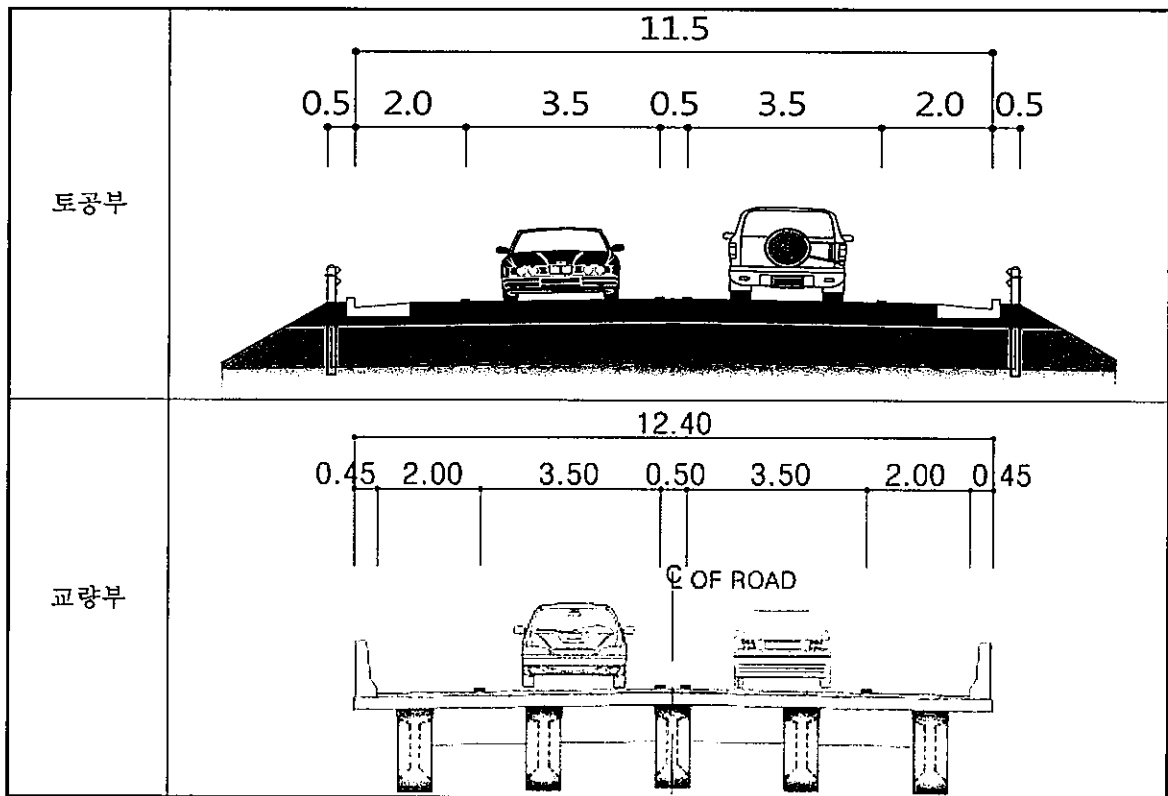
- 2020. 09 :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 2020. 1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제출
- 2021. 01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공람 및 관계기관 의견 수렴
- 2021. 02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영산강유역환경청)

1.4 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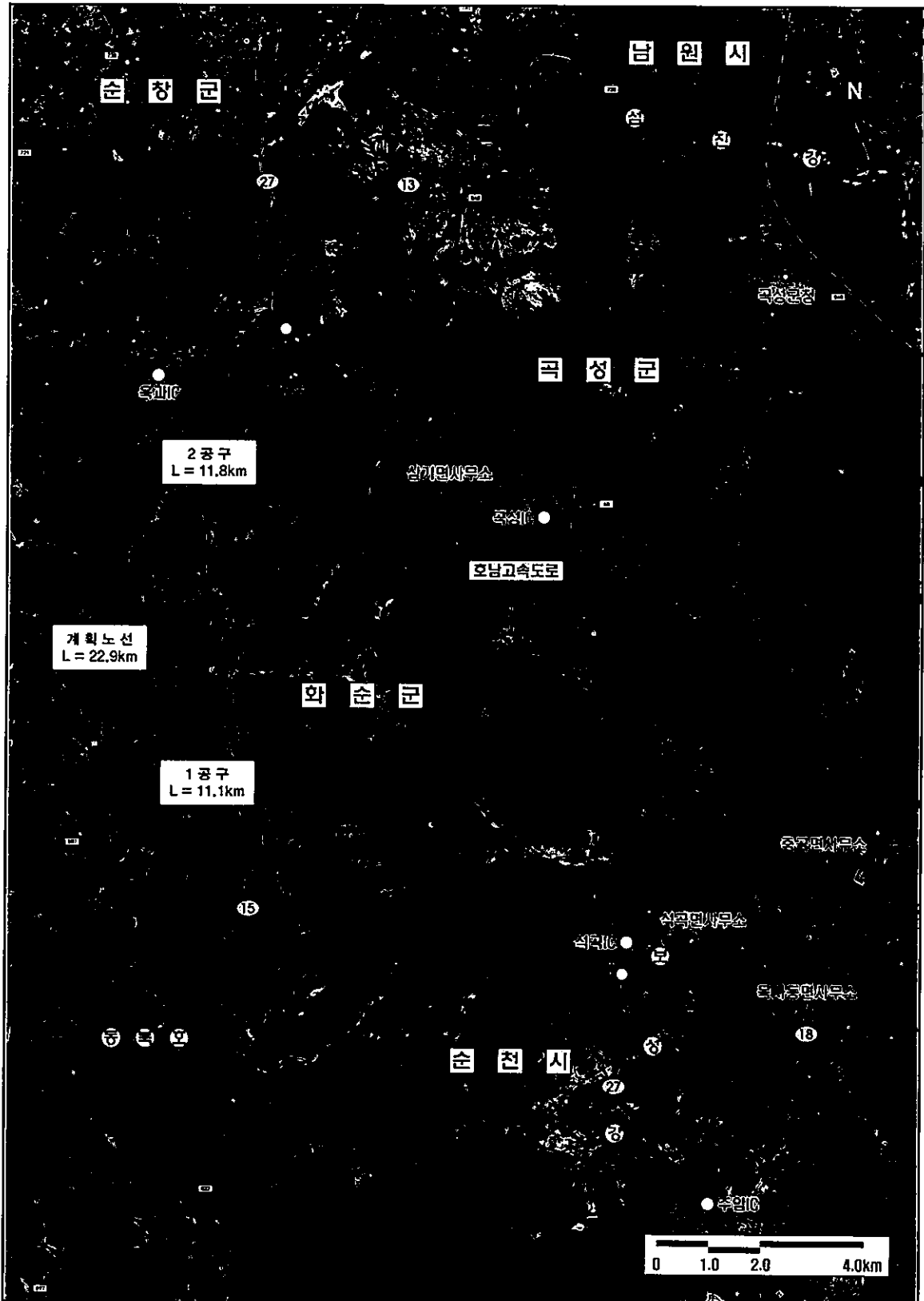
- 가. 계획명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
- 나. 위치 :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 ~ 겸면 평장리
- 다. 계획수립권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라. 승인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마. 협의기관 : 영산강유역환경청
- 바. 연 장 : 22.9km(신설 9.9km, 확장 13.0km)
- 사. 폭 원 : 11.5~12.4m(2차로)
- 아. 설계속도 : 60km/hr

자. 주요 시설물

- 교 량 : 12개소/490m
 - 1공구 : 6개소/140m
 - 2공구 : 6개소/350m
- 출입시설 : 교차로 12개소
 - 1공구 : 교차로 4개소
 - 2공구 : 교차로 8개소



(그림 1-1) 표준횡단면도



(그림 1-3) 계획노선 및 주요 지역 현황도(위성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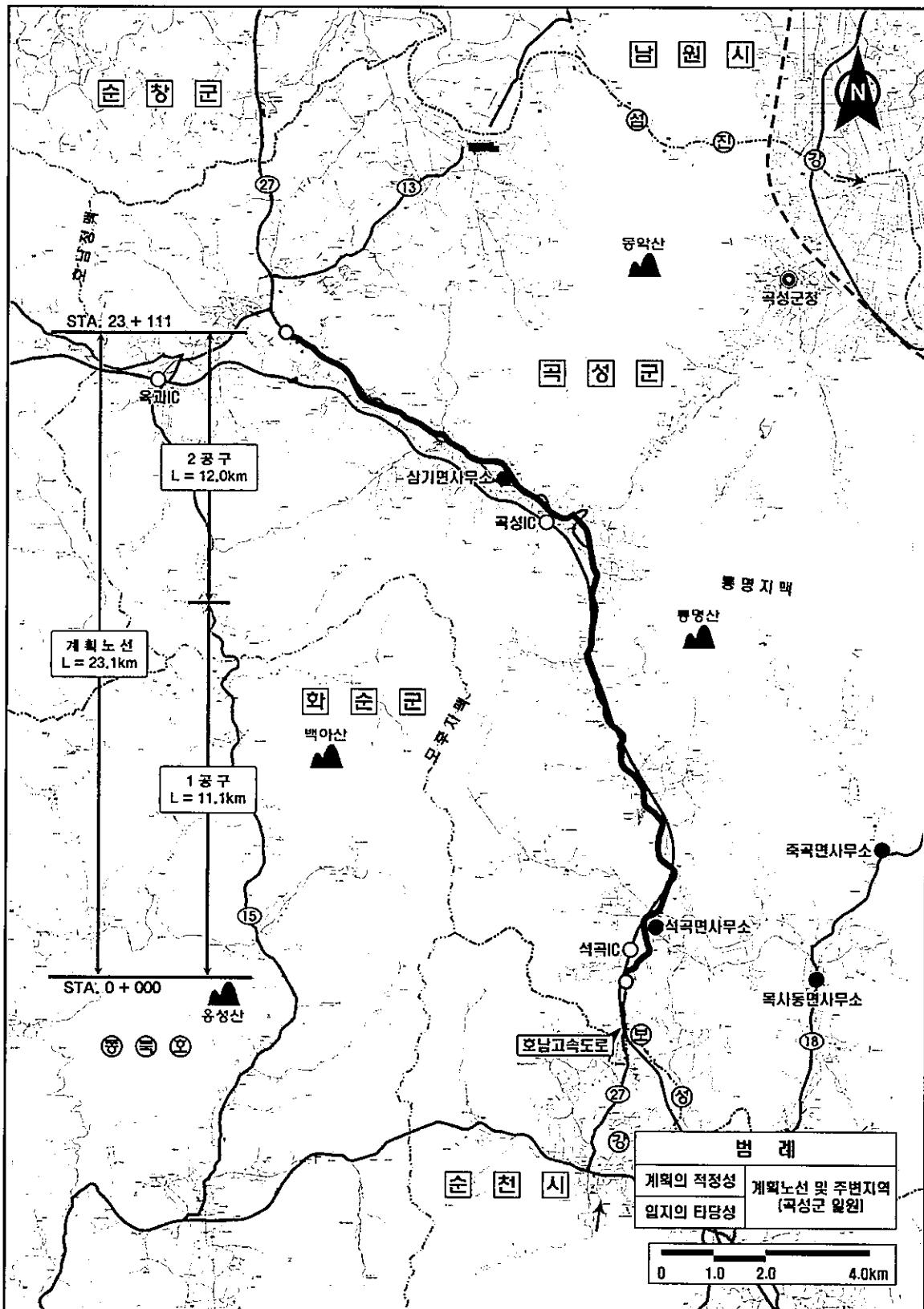
제 2 장 대상지역 설정

2.1 전략환경영향평가

- 대상지역 설정은 도로건설공사 시행으로 계획노선 주변에 대한 자연적 여건과 환경관련지구·지역 지정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였음

〈표 2.1-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선정 기준	대상지역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곡성군 일원)
자연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의 자연환경과 서식환경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한 지형·지질 변화 및 생태축 단절이 예상되는 지역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교량 신설 등)으로 인한 경관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수환경의 보전	○ 계획시행으로 인해 수환경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및 수계(삼기천, 석곡천 등) ○ 수질오염총량 관리 구역("섬본D")
입지의 타당성	생활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변화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토양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 계획시행으로 정온환경 유지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 지자체(곡성군)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 계획 검토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으로 온실가스 배출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계획 검토 ○ 계획시행으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 및 지자체 처리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노선 수립으로 인한 편입토지 및 주변 토지이용상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 계획노선 및 주변 지역(곡성군 일원)



(그림 2-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2.2 환경영향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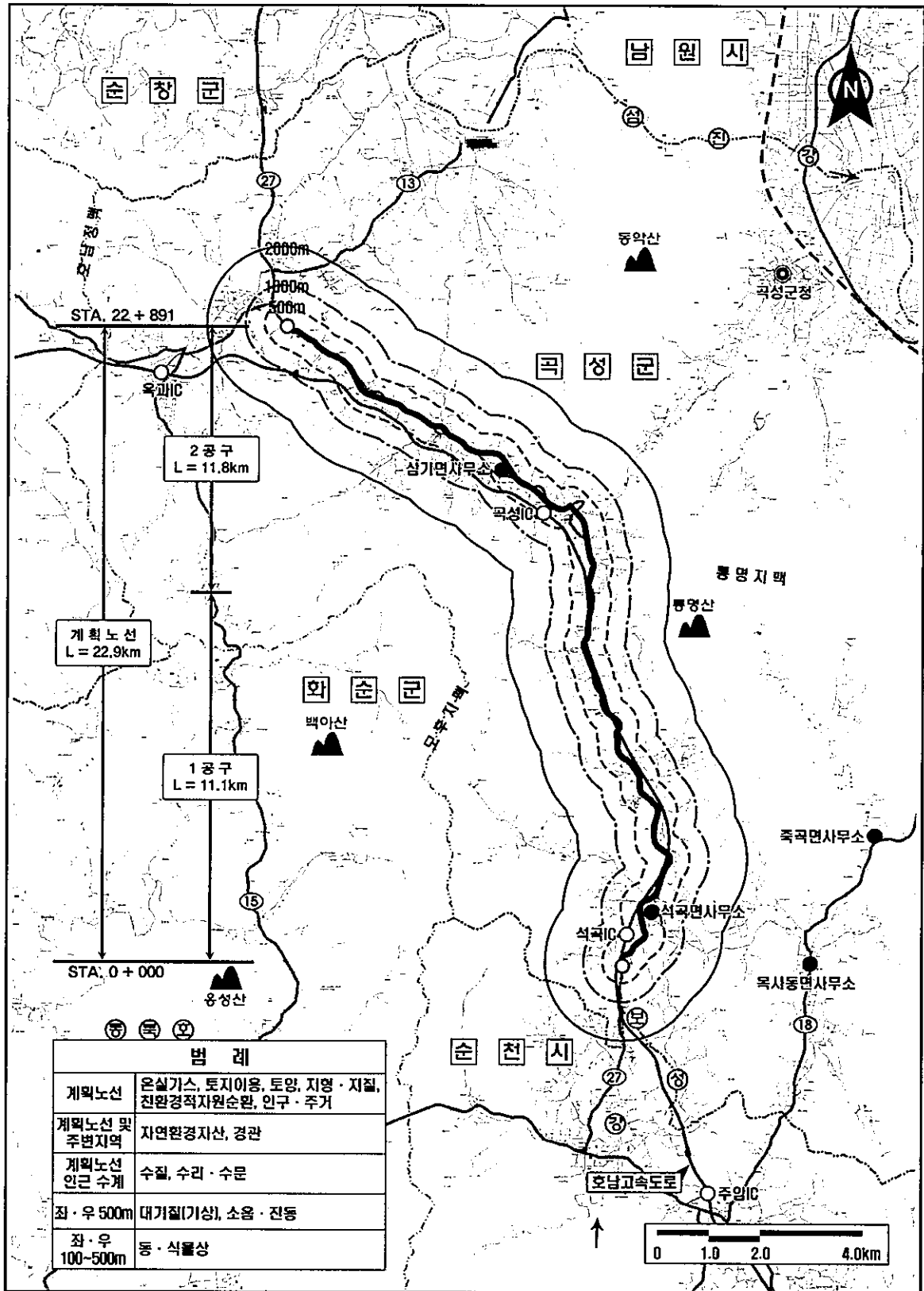
- 본 사업시행으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예측·분석하기 위하여 공사시와 운영시로 구분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였음

〈표 2.2-1〉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항 목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평 가 대 상 범 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자연 생태 환경	동·식물상	○ 사업시행으로 인해 동·식물상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계획노선과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500m 이내 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100~500m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20px;"> <tr> <td>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td> <td>150m</td> </tr> <tr> <td>포유류, 조류</td> <td>500m</td> </tr> <tr> <td>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td> <td>100m</td> </tr> </table>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150m	포유류, 조류	500m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100m	공사시 운영시
	식물상, 식생, 양서·파충류, 육상곤충	150m								
포유류, 조류	500m									
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및 부착생물	100m									
	자연환경 자 산	○ 사업시행으로 인해 자연환경자산의 변화가 직접적으로 예상되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공사시 운영시						
대기 환경	기 상	○ 주변 기상관측소의 지난 10년간 기상자료를 분석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 예측 및 분석의 기초 자료로 이용	○ 계획노선 인근 -기상관측소(순천)	2009~ 2018년						
	대기질	○ 「환경영향평가 평가범위 설정 가이드라인, 2013.1.1., 환경부」를 참고하여 도로 사업의 평가범위 설정 기준인 500m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운영시						
	온실가스	○ 공사시 투입장비 및 운영시 이동차량에 따른 온실가스배출이 예상되므로 계획노선을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수 환경	수 질	○ 공사중 강우시 토사 유입과 운영시 발생 오수 및 비점오염원에 의한 영향이 예상되는 삼기천, 석곡천 등 주변수계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삼기천, 석곡천 등)	공사시 운영시						
	수리수문	○ 사업시행에 따른 유출량 변화에 따른 수위 변화가 예상되는 삼기천, 석곡천 등 주변수계를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 (삼기천, 석곡천 등)	공사시 운영시						

〈표 2.2 - 1 계속〉 평가항목별 평가대상지역 설정

항 목		구 분	평가대상지역 설정 기준(사유)	평 가 대 상 범 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토지 환경	토지이용		○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수반되는 편입지역을 공사시 및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토 양		○ 공사시 공사장비 발생 폐유 및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이 예상되는 계획노선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공사시
	지형·지질		○ 공사시 절·성토에 따른 지형형상 및 지질 변화가 예상되는 계획노선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공사시
생활 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이 예상되는 계획노선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소음·진동		○ 공사시 건설장비의 가동에 따라 인근 지역에 소음·진동 영향이 예상되므로 일반적인 장비투입대수에 따른 이격거리별 소음도를 참조하여 500m 이내 지역을 공사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운영시 계획노선 이동차량 의해 인근 정온시설에 소음 영향이 예상되므로 계획노선을 운영시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500m	공사시 운영시
	위락·경관		○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심의 지침, 2015.8, 환경부」에 따라 계획노선 좌우 500m이내를 근경으로, 좌우 1km이내를 중경으로, 좌우 2km이내를 원경으로 설정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근경(좌우 500m이내) -중경(좌우 1km이내) -원경(좌우 2km이내)	운영시
사회 경제 환경	인구·주거		○ 사업시행으로 인해 공사시 및 운영시 인구 및 주거의 변화가 예상되므로 계획노선을 평가대상범위로 설정	○ 계획노선	공사시 운영시



(그림 2-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설정도

제 3 장 평가항목 및 범위 등의 설정

3.1 전략환경영향평가

3.1.1 평가항목의 설정

- 전략환경영향평가가시 환경영향 분석을 위하여 계획으로 인해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검토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평가 항목으로 선정하였음

〈표 3.1 - 1〉 평가 항목 선정 사유

구분		선정사유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대안 설정·분석 검토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 계획시행시 자연환경자산 등 각종 보호지역에 영향 예상 ○ 계획시행시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동·식물 서식지 및 다양성의 변화 예상 ○ 각종 보호생물종의 영향검토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백두대간 및 주요 정맥 등 지형·지질 변화 예상, 생태축 단절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시행으로 스카이라인 변화 등 경관 영향 예상
	수환경의 보전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의 현황 파악 및 계획시행으로 인해 운수천, 금반천 등 수계에 영향 예상 ○ 수질오염총량 관리 유역에 해당("섬본D" 유역)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파악 ○ 계획시행시 대기질 변화 및 토양오염 유발요인 검토, 소음·진동 영향 등이 예상
	환경기초시설 적정성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처리 가능여부 검토
	자원 ·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량 및 자원활용계획 검토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계획 검토
사회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계획시행시 토지이용변화 예상

3.1.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조사·예측 등)

가.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 본 사업의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표 3.1-2>와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사업대상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표 3.1 - 2>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조사 계획	예측 방법
계획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상위 및 관련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관련 상위계획과 연계성 및 관련계획과의 조화성 검토, 대안 계획의 적정성 검토
자연 환경 의 보전	생물다양성 · 서식지 보전	① 조사내용 : 자연(식생현황 및 동·식물 서식환경 등) 및 자연환경 자산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예측 ○ 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동·식물 및 서식환경을 조사하고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형 형상, 지질 상황,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산계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에 따른 지형변화 및 생태축 단절영향 검토 ○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의 영향 유무 검토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① 조사내용 : 주변 경관 현황 및 경관자원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검토 (근경, 중경, 원경) ○ 보전가치가 있는 경관자원 영향 여부 검토
	수환경의 보전	① 조사내용 : 지표수질 현황, 지하수질현황, 오염원 현황, 수질오염총량 관리구역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인근 수계 (삼기천, 석곡천 등)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의 현황 파악,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근하천(삼기천, 석곡천 등) 수질변화 검토 ○ 수질오염총량 부하량 산정 및 지자체 할당 협의

〈표 3.1 - 2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구분		조사 계획	예측 방법
생활 환경 의 안정 성	환경기준 부합성	① 조사내용 :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대기질, 토양, 소음·진동 현황 파악 및 환경기준 부합성 검토
	환경기초 시설의 적정성	① 조사내용 :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장래계획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기초시설 현황 파악 및 주변 오염원 처리계획 검토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① 조사내용 :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온실가스 배출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시 폐기물 발생 검토 및 자원 활용계획 검토 ○ 계획시행시 온실가스 배출 변화 예측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에너지 사용 계획 등 검토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병행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변화 검토

나. 조사지점 및 선정 사유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계획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3.1 - 3〉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계획

항 목	측정지점	측정횟수	분석항목	
대기질	10지점 (3일)	1회	8개 항목	PM-2.5, PM-10, SO ₂ , NO ₂ , O ₃ , CO, 벤젠, Pb
지표수질	8지점	1회	21개 항목	pH, BOD, COD, DO, SS, T-N, T-P, TOC,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총대장균군,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지하수질	8지점	1회	32개 항목	pH, KMnO ₄ 소비량, 경도, 탁도, 색도, 증발잔류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6가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페놀, 황산이온, 망간, 불소, 아연, 철, 수은, 납, 시안, 비소
토 양	8지점	1회	17개 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BTEX, TPH, TCE, PCE
소음·진동	11지점	1회	소음도 진동도	소음도(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도(주간 2회, 야간 1회)
동·식물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1회	동물상 식물상	육상식물상(식물상, 식생)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육수생물상(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3.2 환경영향평가

3.2.1 평가항목의 선정

- 본 사업시행에 따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2018.12.12.,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스코핑 가이드라인(평가항목 · 범위 결정 등을 위한 지침서), 2011.12, 환경부」에 준하여 설정하였음
- 동·식물상,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수리·수문,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소음·진동, 위락·경관 등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10개 항목을 중점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자연환경자산, 기상, 친환경적 자원순환, 인구·주거 등 기초 자료로 활용하거나 지역 특성 파악 및 비교적 영향이 적은 4개 항목은 일반평가항목으로 선정하였음
- 그 외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악취, 해양환경, 위생·공중보건, 전파장해, 일조장해 등 5개 항목은 평가항목에서 제외하였고, 각 항목별 선정 사유는 <표 3.2-1>와 같음

<표 3.2 - 1> 평가 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자연생태 환경	동·식물상	○사업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상 서식환경 변화가 예상됨 ○현존식생 및 녹지자연도 변화 발생 ○운영시 주변 하천(삼기천, 석곡천 등)에 미치는 수생태계 영향	○	-
	자연환경자산	○자료조사를 통한 계획노선 및 주변 자연환경자산의 현황 파악 및 사업시행에 따른 영향여부 검토	-	○
대기환경	기상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함	-	○
	대기질	○공사시 투입장비 가동에 따른 비산먼지 및 배기가스 발생 및 운영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배기가스 발생에 의한 영향이 예상됨	○	-
	온실가스	○공사시 투입장비 및 자재투입, 운영시 차량통행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이 예상됨	○	-
	악취	○ “악취” 항목은 도로 건설사업 특성상 사업시행에 따른 악취 유발요인이 없으므로 제외하였음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 개량공사

〈표 3.2 - 1 계속〉 평가 항목 선정(제외) 사유

분 야	항 목	선정(제외)사유	중점	일반
수환경	수질	○공사시 교량 설치공사 등에 따른 토사유출 발생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 ○운영시 주변 하천(삼기천, 석곡천 등)으로 초기우수에 의한 비점오염물질 유입	○	-
	수리·수문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하천(삼기천, 석곡천 등)의 홍수위 및 홍수량 등 수리·수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함	○	-
토지환경	토지이용	○사업시행 전·후의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됨	○	-
	토양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에 따른 폐유발생, 지장물 철거에 따른 토양오염 영향 등이 예상됨	○	-
	지형·지질	○공사시 토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지형 변화 및 토사유출, 사면발생 등이 예상됨	○	-
생활환경	친환경적 자원순환	○공사시 지장물로 인한 건설폐기물 발생 ○공사시 투입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	○
	소음·진동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발파 및 항타로 인한 소음·진동 발생 ○운영시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영향이 예상됨	○	-
	위락·경관	○공사시 절·성토로 인한 경관변화 예상 ○교량 및 교차로 등의 구조물 설치로 인한 경관변화 발생	○	-
	전파장해	○사업시행에 따른 전파장해 유발요인은 없음	-	-
	일조장해	○사업시행으로 인해 일조에 미치는 영향 없음	-	-
	위생·공중보건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의 건강영향 항목의 추가·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제외하였음	-	-
사회·경제환경	인구·주거	○사업시행에 따른 유발인구 추정 및 인구·주거 변화 등을 파악하기 위함	-	○

3.2.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조사·예측 등)

가. 평가 항목별 조사·평가 방법

- 본 사업의 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은 <표 3.2-2>과 같음
- 조사는 기존자료를 활용하되,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사업대상지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환경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후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저감방안을 수립

<표 3.2-2>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예측 방법
자연 생태 환경	동· 식물 상	① 조사내용 : 육상동·식물상, 육수동·식물상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약 500m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계획노선 좌·우 1km)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주변 동·식물에 미치는 영향 예측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자연 환경 자산	① 조사내용 : 자연환경자산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경계로부터 약 1km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과악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결과 참조
대기 환경	기상	① 조사내용 : 계획노선 주변 기상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과 인접한 순천기상관측소 ③ 조사방법 : 관련 기상관측자료	○ 기상연보 자료 분석·정리
	대기 질	① 조사내용 : 주변 대기오염 발생원 및 대기영 향예상시설 분포현황, 대기질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으로부터 약 500m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 토공량 및 장비운영에 따른 비산먼지, NOx 항목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 계획노선 차량통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 - 공사시 : AERMOD 확산모델 이용 - 운영시 : CALINE-3
	온실 가스	① 조사내용 : 계획노선 인근 온실가스 배출시 설 및 에너지이용시설 현황과악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조사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를 통한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

〈표 3.2-2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조사 계획	예측 방법
수 환경	수질	① 조사내용 : 지표·지하수질 현황, 수질관련 환경기초시설 현황,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삼기천, 석곡천 등)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 조사	○공사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주변수계(삼기천, 석곡천 등)에 미치는 영향 예측 -합리식 이용 ○공사인부 투입에 의한 오수 발생량 산정 -원단위법 이용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영향 예측
	수리 · 수문	① 조사내용 : 홍수현황 및 배수체계 조사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수계(삼기천, 석곡천 등) ③ 조사방법 : 기존 관측·통계자료 활용	○사업시행에 따른 계획노선 인근수계(삼기천, 석곡천 등)의 수리·수문 변화 검토 -사업관련 사전제해영향성검토서 참조
토지 환경	토지 이용	① 조사내용 : 용도별, 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지장물 분포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사업시행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예측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참조
	토양	① 조사내용 : 토양오염유발시설 현황, 토양오염도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토양오염 개연성 여부 및 사업시행에 따른 공사시 및 운영시 토양오염 영향 검토 -기존자료 및 현지 측정 결과 참조
	지형 · 지질	① 조사내용 : 지형·지질현황,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특이 지형 분포 현황 등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질·성토에 의한 지형 변화, 토사유출, 비옥토 유출, 사면발생, 사면안정성 등 -문헌자료 및 사업관련 지반조사 보고서 등 참조
생활 환경	친환 경적 자원 순환	① 조사내용 :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③ 조사방법 : 기존 원단위 자료 조사	○공사시 및 운영시 폐기물 발생 및 재활용 등 처리대책 -원단위법 이용
	소음 · 진동	① 조사내용 : 주변 발생 소음원 및 주요 정온시설 분포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현지조사	○공사시 공사장비 가동 및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 영향 예측 -합성소음도 산출식 및 점음원 거리 감쇠식 이용 ○운영시 계획노선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영향 예측 -교통소음예측식 이용

〈표 3.2-2 계속〉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 황 조 사	예 측 방 법
생활 환경	위락· 경관	① 조사내용 : 위락·경관 현황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변화 예측 - 지형도 및 인공위성사진 분석, 경관시뮬레이션
사회 경제 환경	인구· 주거	① 조사내용 : 인구현황 파악 및 장래 인구 변화예측 ② 조사범위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 문헌자료(통계연보)	○ 사업시행에 따른 유입인구 예측 및 영향 검토 - 문헌자료 및 사업관련 설계보고서 참조

나. 조사항목 및 조사지점 선정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환경 현황을 파악하고,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계획노선 및 주변에 분포하는 주거지역, 시설물 등을 측정지점을 선정하였음

〈표 3.2.-6〉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조사 계획

항 목	측정지점	측정횟수	분석항목	
대기질	10지점 (3일)	2회	8개 항목	PM-2.5, PM-10, SO ₂ , NO ₂ , O ₃ , CO, 벤젠, Pb
지표수질	8지점	2회	21개 항목	pH, BOD, COD, DO, SS, T-N, T-P, TOC, 카드뮴, 시안, 수은, 비소, 유기인, 납, 6가크롬, ABS, PCB, 총대장균군, PCE, 디클로로메탄, 벤젠
지하수질	8지점	2회	32개 항목	pH, KMnO ₄ 소비량, 경도, 탁도, 색도, 중발잔류물,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6가크롬,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염소이온, 페놀, 황산이온, 망간, 불소, 아연, 철, 수은, 납, 시안, 비소
토 양	8지점	2회	17개 항목	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불소, 유기인, PCB, 시안, 페놀, BTEX, TPH, TCE, PCE
소음·진동	11지점	2회	소음도 진동도	소음도(주간 4회, 야간 2회) 진동도(주간 2회, 야간 1회)
동·식물상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	2회 (조류 3회)	동물상 식물상	육상식물상(식물상, 식생) 육상동물상(포유류, 조류, 양서·파충류, 곤충류) 육수생물상(어류, 저서성대형무척추동물)

제 4 장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

4.1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

가. 결정내용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공개 내용 :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결정된 “평가 항목 및 범위” 등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내에 14일 이상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함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포함)
- 공개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정보통신망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주민 의견 반영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반영
 - 공개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결과(평가 항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주민의견 수렴
 -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반영

4.2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

가.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관계기관 의견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한 후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익산지방국토관리청), 관계 행정기관(전라남도, 곡성군) 및 협의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검토 기간 : 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공고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 공고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 공고 시기 : 초안을 제출한 날부터 10일 이내
- 공고 신문 :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대상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지역신문에 1회 이상 공고
- 공고 내용
 -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 기간 및 장소
 - 설명회 일시 및 장소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의 제출시기 및 방법
- 공고 및 공람내용 게시
 - 관할지자체(곡성군) 홈페이지 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요약문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고 및 공람 내용,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 공람 기간 : 20일 이상 40일 이내(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람 장소 : 개발기본계획 대상지역에 1개소 이상

다. 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1) 설명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 설명회 개최 주체 :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 설명회 시기 : 공람 기간 내
- 설명회 실시 공고 : 설명회 개최하기 7일전까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공고 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음

2) 공청회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이고,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 총수의 50% 이상인 경우

라. 주민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4조
- 의견 제출 기한 : 공람기간 시작일 ~ 공람기간 완료 후 7일 이내
- 제출 의견 : 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에게 해당 계획의 수립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제출

마.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7조
-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
 - 『습지보전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 및 습지주변관리지역
 -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
- 본 사업은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되지 않음

바.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 관련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제4항 및 시행령 제19조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결과와 반영 여부 공개
- 공개 시점 : 개발기본계획 확정 이전
- 내용 게시 장소
 - 관할지자체(곡성군) 홈페이지 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홈페이지
 -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www.eiass.go.kr>)
- 내용 게시 기간 : 14일 이상 게시

4.3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 수렴

-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공람 및 설명회 등을 통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제5항에 해당될 시(계획노선의 변경이 기준 이내일 경우) 협의기관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수렴절차를 생략하는 것으로 검토할 계획임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수렴) ⑤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경우(제14조에 따라 의견 수렴 절차를 생략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협의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및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27., 2016.5.29.>

1. 제18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보다 사업규모가 제22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최소 사업규모 이상 증가되지 아니한 경우
4. 폐기물소각시설, 폐기물매립시설, 하수종말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등 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시설의 입지가 추가되지 아니한 경우

제 5 장 약식평가절차 신청여부

5.1 전략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에 의거하여 본 계획은 [별표2의 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절차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표 5-1〉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및 협의요청 시기

구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 요청시기	해당여부
가. 도시의 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	해당없음
나. 도로의 건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나 군수가 해당 교통시설의 관리청 및 같은 교통권역의 관계 시장이나 군수와 협의할 때	해당없음

5.2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및 동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에 의거하여 약식평가절차 대상사업은 대상사업의 규모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을 말함
- 본 사업노선의 총 연장은 22.9km이며, 이중 신설 9.9km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인 4km의 200%를 초과하여 약식평가절차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표 5-2) 약식환경영향평가 절차 해당여부

약식절차 대상사업 법적근거	금회사업 해당여부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u>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00% 이하인 사업</u> 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대상사업의 규모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최소 규모의 247.5%임 - $9.9\text{km}/4\text{km} \times 100 = 247.5\%$
2. 사업지역에 <u>환경적·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u>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	○ 해당사항 없음 - '마' 해당됨
가.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u>생태·자연도 1등급권역</u>	- 해당사항 없음
나.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른 <u>습지보호지역 및 습지구변관리지역</u>	- 해당사항 없음
다.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u>자연공원</u>	- 해당사항 없음
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33조에 따른 <u>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야생생물보호구역</u>	- 해당사항 없음
마.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에 따른 <u>보호구역</u>	- 보호구역 통과 (석곡리석불입상-문화재자료 제28호)
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아.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u>수변구역</u>	- 해당사항 없음

제 6 장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6.1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의견수렴 개요
 -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 같은법 시행령 제4조 내지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음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운영위원 : 위원장(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장) 포함 7인 중 6인 의견 제출

구 분	소 속	성 명	비고	의견제출여부
위원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양○○	승인기관	×
위 원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	협의기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박○○	승인기관	○
	곡성군 안전건설과	윤○○	관할지자체	○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김○○	민간전문가 (승인기관 추천)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	민간전문가 (협의기관 추천)	○
	5대강유역협의회	박○○	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

6.2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의견

- 영산강유역환경청 환경평가과 김○○(협의기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곡성 석곡IC-경면 도로시설개발공사]

총괄 의견

- 동 사업은 호남고속도로 석곡IC에서 곡성군 경면을 연결하는 국도 27호선 (전남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경면)을 개량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임
- 동 심의의견은 심의결과에 반영하여야 하며, 결정된 심의결과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함
- 평가서상의 모든 내용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어야 하며, 조사방법(지점 선정, 예측 조건, 예측 사용된 수치 등)에 대한 산정근거를 명확히 하여 제시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 '18.12.12)」에 따라 충실히 작성하여야 함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대상지역의 범위(영향권역 포함)는 계획노선 지역 및 주변지역의 현황을 고려하여, 계획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고, 평가항목별 범위 설정 근거 또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기존노선을 최대한 활용하되 신설 노선 선정 시에도 식생·지형훼손 등 최소화 하는 대안 강구
 - ※ 영향권 내 다른 개발사업이 추진될 경우 누적평가 실시

2. 토지이용 구성안

-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의 자연생태계 현황 및 지형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노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로개설로 인한 지형훼손 및 생태계 단절, 경관 부조화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토지이용계획 수립
 - ※ 노선의 신설 및 확·포장 여부를 쉽게 확인한 수 있도록 사진·도면·표 등으로 구분 표시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평가항목별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규모, 토지이용계획, 배치도 등 2-3개 대안)을 설정한 후 대안별 환경적 측면을 중점적으로 비교·제시하고 선정안에 대한 선정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자연생태환경

- 동·식물상 조사는 종 출현(활동)이 왕성한 계절에 충분한 시간동안 정량적·정성적으로 실시하고 영향예측 및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제시
- 문헌조사를 활용한 경우 조사 결과가 사업지구 현황과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판단하기 곤란할 경우 추가조사 필요
- 생태계 단절이 예상되는 구간에 대한 정밀분석을 실시하고,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다양한 저감대책(생태통로, 로드킬 방지대책 등) 수립·제시

○ 수질

- 공사 시 토사유출, 오수발생량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제시
- 하천 내 구조물(교량 등)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수질 및 수리·수문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제시
- 운영 시 비점오염원 발생에 따른 적정 저감방안 수립·제시

○ 대기질, 소음·진동

- 주변 정온시설 현황(이격거리 포함)을 현황도에 중첩하여 표시하고, 공사·운영 시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여 구체적인 저감방안 수립·제시
- 공사·운영 시 온실가스 항목을 포함하여 예측하고, 차량통행량을 바탕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후 영향예측 및 이에 대한 적정 저감방안 수립·제시

○ 지형·지질 및 경관

-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요 생태축(지맥 등)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강구
- 사업시행으로 인한 토양 공급 및 처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
- 주변 경관과의 이질감 및 부조화, 경관 차폐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저감방안(질·성토고의 축소, 교량화, 차폐식재 계획, 인공구조물의 색채 및 재질조정 등)을 수립·제시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통해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수립된 의견이 동 사업계획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해당하지 않음

7. 기타 사항

- 동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에서는 상기 제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반영하고, 반영이 불가피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2020. 10.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 영산강유역환경청 주무관 김)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하천공사과 박○○(승인가관)

제9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제2020-9호
- 심의일시 : 2020.9.16.(수) ~ 10.12.(월) / 서면심의
- 심의의결

안건의결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대상지역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성안	○ 하천횡단 교량의 경우 유수부내 교각설치 지양 필요
항목별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공사시 및 운영시 적정 소음저감대책 수립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의견 없음
의견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적극적인 주민의견 수렴을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필요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 없음
	7. 기타 사항	○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작성시 심의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야 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심의위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곡성군청 안전건설과 윤○○(관할지자체)

제9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전명 : 곡성 석곡IC-경면 도로시설개량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제2020-9호
- 심의일시 : 2020.9.16.(수) ~ 10.12.(월) / 서면심의
- 심의의결

안건의결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 | | | |
|-----------------------|--|------------------------------------|
| 항
목
별
의
견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2. 토지이용 구성안 -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7. 기타 사항 - | 환경영향 및 저감대책 강구(동식물상, 수질, 대기, 소음 등) |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10월 일

심의위원 : 윤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승인기관 추천)

제9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제2020-9호
- 심의일시 : 2020.9.16.(수) ~ 10.12.(월) / 서면심의
- 심의의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건의결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견있음 / <input type="checkbox"/> 의견없음 / <input type="checkbox"/>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제책의 적정성과 함께 입지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지역현안과의 연계성고려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심의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할 것.	
항 목 별 의 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입항평가 대상지역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토지이용 구성안	사업지역 내의 국도 27호, 호남고속도로 단선된 지역의 경우 단절로 인한 자연환경과 지역생태훼손을 최소화 할 계획 수립 필요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신설구간에 따른 지형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 제시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계획노선 주변의 정온시설현황 조사(주변환경영향평가 등)와 함께 주변 대기, 소음 진동 등 영향 여부를 분석·제시토록 함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한 주민의견 수렴절차 이행과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할 필요있음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해당 사업은 약식평가 절차 대상이 아님
	7. 기타 사항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현지 조사원칙을 준용해야 함. 다만 현지조사 불가능한 경우에는 기존자료, 가능한 최근의 통계자료등을 활용할 수 있음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9월 일

심의위원 : 김 ○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

-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협의기관 추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통보서

(광성 석곡IC-검면 도로시설 개량공사)

□ 총 관 의 건

- 본 건은 전라남도 곡성군 석곡면 유정리와 검면 평정리를 연결하는 곡성 석곡IC-검면 도로시설(연장 22.9km) 개량공사를 위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에 대한 심의의견임

□ 항목별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의견없음
2. 토지이용 구상안
 - 의견없음
3. 대안
 - 다수의 노선대안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적 영향(생태계 현장조사 등에 근거한 평가, 지형훼손의 정도, 경관적 영향 등)뿐만 아니라 생활환경적 및 사회적 영향(대기질, 소음, 지역주민 수용성 등)의 종합적 평가를 통한 친환경적 최적 노선 선정 과정 및 결과의 구체적인 명시 필요
 - 계획노선 내 교량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입지 대안 검토
4.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의견없음
6. 기 타(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 위주로 작성)
 - 계획노선 주변의 타 교통시설(호남고속도로 등) 등을 고려한 소음·진동 누적평가를 통한 적정성 검토
 - 통명지맥 등의 통과구간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해 지형적 연결성을 보존할 수 있는 대안(터널화 등) 수립 및 비교·검토
 - 계획노선 주변 하천구역 등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검토
 - 계획노선 통과구간을 대상으로 생태계 등의 현장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으로 인한 생태계 영향 최소화를 위한 사전 예방적 대책 검토

2020. 9. 28.

심의위원 선



- 5대강유역협의회 박○○(주민대표 및 시민단체)

제9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결서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개발기본계획]

- 안 건 명 : 곡성 석곡IC-겸면 도로시설개량공사 전략 및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 심의
- 안전번호 : 제2020-9호
- 심의일시 : 2020.9.16.(수) ~ 10.12.(월) / 서면심의
- 심의의결

<input checked="" type="checkbox"/> 안건의결 : <input checked="" type="checkbox"/> 의견있음 / <input type="checkbox"/> 의견없음 / <input type="checkbox"/> 보완(재심의) ※ 원안/수정/보완을 선택하여 해당 칸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의견	○ 사업구간의 주변 환경 및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동시에 자연환경에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견 및 주민의견 수렴을 성실히 반영하여야 함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선정	○ 대상지역 선정은 적절한 것으로 보여지며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2. 토지이용 구성안	○ 사업구간 전반에 걸쳐 보호·보전지역을 포함하고 있지 않지만 교량 등 시설물 설치에 따라 주변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함
3.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 사업구간 내 전답, 계곡, 하천 등으로 공사시 발생할 수 있는 비산먼지, 토양·수질 오염원이 직접 유출되지 않도록 충분한 대책 마련할 것
4. 평가항목 및 범위·방법 등	○ 의견없음
5.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계획	○ 도로개설 및 확장은 주변마을의 인문·환경·문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사 및 의견수렴 방법을 강구
6. 약식평가 신청가능 여부	○ 의견 없음
7. 기타 사항	○ 정밀현지조사를 통해 주변 환경 및 여건을 정확히 이해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곡성군과 밀접하게 협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규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 안전에 대한 심의 의결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심의위원 : 박○○

익산지방국토관리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장 귀하